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청소년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요구와 정책 제안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1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정수 상향(안 제12조제1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추가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제6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0”을 “1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국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이”를 “위원을”로, “포함되도록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7. (생 략)	제11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15----------.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6. (생 략) ④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